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5-44호

우편법 시행령 제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상품 안내서 우편배달제도 시험서비스 공고(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6일

우정사업본부장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시험실시 공고

I.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의 개요

1. 개념

가. 발송인이 생활정보에 관한 홍보물(광고전단지, 카탈로그, 쿠폰북 등)을 우체국에 직접 접수하거나, 발송인이 우체국에 홍보물 제작을 위탁하여 제작된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편서비스

나. 생활정보를 인쇄한 소상공인 및 일반 기업체의 홍보물로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및 책자형(카탈로그형)의 요금별납 일반통상우편물

1) 일정지역 내(배달우체국 관할)의 불특정인(예 : 세대주님)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여야 함

2)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은 발송인의 신청에 따라 접수 우체국장은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위탁제작 및 수취인의 주소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2.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종류 및 형태

종류		형태
전단지형	접착형	용지 1장(3단 접지, 6면)의 1면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를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 내용을 인쇄하여, 3단으로 접어 접착방식으로 봉합한 우편물
	봉투형	내용(홍보)문을 A4용지 또는 16절지 1장의 양면에 인쇄하여 봉합한 우편물
	브로마이드형	내용(홍보)문이 인쇄된 용지 1장(2절지, 4절지)을 접지(4회, 3회)하여, 바깥쪽 1면에 우편물 기재사항을 인쇄하고, 나머지 면에 홍보내용을 인쇄한 봉합하지 않은 우편물
책자형	카탈로그형	철침, 풀 등에 의해 내용(홍보)문을 책자 형태로 제본하여 봉합한 우편물

3.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규격

가. 기본 규격

- 1)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4-67호(우편물의 용적, 중량 및 포장방법)의 요건에 적합해야 함
- 2) 통상우편물 최대용적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19호(우편수취함 등의 크기, 구조, 재질, 외부표시에 관한 사항 고시)에서 정한 우편수취함에 투합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함
- 3)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5-26호(통상우편물의 규격요건 및 우편물의 외부표시 사항)의 기준에 적합해야 함

나. 우편물 종류별 규격

- 1) 전단지형(접착형, 봉투형) : 1통당 무게가 50g를 초과하지 않은 규격 일반통상우편물
- 2) 전단지형(브로마이드형) : 1통당 무게가 1,200g 이하의 봉합되지 않은 규격 외 일반통상우편물

3) 책자형(카탈로그형) : 1통당 무게가 1,200g 이하의 규격 외 일반 통상우편물(카탈로그, 쿠폰북 등)

4. 다음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

가. 인사장, 안내장, 명함, 지로용지, 문서 등 인사말 또는 안내문 성격의 내용이 포함된 우편물

나. 건전한 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 등을 해치는 내용의 우편물

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의 우편물 등

II.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조건

1. 접수우체국 : 우편물을 직접 배달할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2. 우편물 종류별 1회 접수 최소 우편물수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1,000통	1,000통	1,000통	2,000통

3. 우편물 제출방법

가. 광고주가 직접 제작한 홍보물을 발송하는 경우

1) 우편물 표면 왼쪽 중간에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반송불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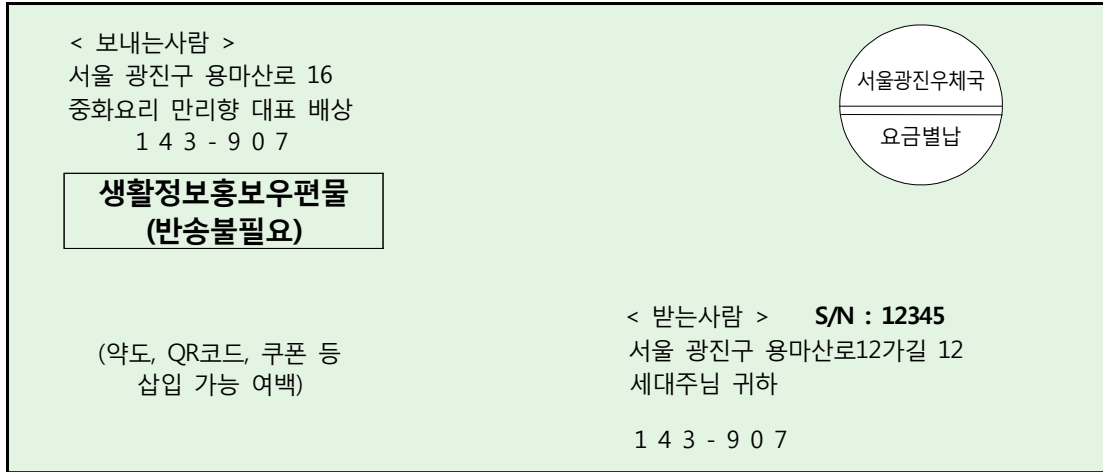
 (가로 5cm, 세로 2cm) 이라고 표시

2) 우편물 표면에는 연속번호(Serial Number)를 표기해야 함

* 예시) 2만통 접수 시 연속번호 : S/N : 00001~20000

3) 우편물 표면 왼쪽 아래에 약도, QR(Quick Response) 코드, 쿠폰 등을 표시할 수 있음

< 우편물 표기방법 예시 >



4) 아파트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은 동(棟)별로 구분하고, 일반 주택 지역에 배달할 우편물은 우편번호 6자리(`15.8.1.부터는 5자리)로 구분하여 제출

5) 접수신청서 작성 제출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광고주가 홍보물의 제작 및 배달을 우체국에 위탁하는 경우

‘가. 5) 접수신청서 작성 제출’을 준수하여야 함

Ⅲ.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우편요금 감액범위 등

1. 우편물 형태별 우편요금 감액률 및 적용요금 등

구 분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우편요금 감액률	60%	60%	60%	50%
적용 우편요금	규격	규격	규격 외	규격 외

2. 우편물 제작 수수료 : 홍보물을 제작 의뢰한 경우에만 부과함

구 분	전단지형			책자형
	접착형	봉투형	브로마이드형	카탈로그형
홍보물 인쇄비	80원/장(2면)	90원/장(2면)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디자인 제작비	20,000원/1건(2면)	20,000원/1건(2면)	"	"

3. 마케팅 대행업체 수수료

가. 책자형(카탈로그형)에 대해서만 지급

나. 마케팅 대행업체가 접수한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의 수납 우편요금
중 7% 지급

IV. 기타사항

1. 마케팅 대행업체 관리

가. 등 록

- 1) 생활정보홍보우편물을 접수하기 위해서는 지방우정청에 ‘마케팅
대행업체 등록 신고서’[붙임2]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 마케팅 활동권역은 등록된 지방우정청이 관할하는 5급 이상 우체국
(직접 배달할 우체국)에 한 함
- 3) 동일 마케팅 대행업체는 모든 지방우정청의 마케팅 대행업체로 등록 가능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마케팅 대행업체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음

- 1) 접수일로부터 3개월간 접수실적이 없을 경우
- 2) 생활정보홍보우편물 및 우체국 별납인이 인쇄된 봉투를 생활정보
홍보우편물 발송용도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3) 마케팅 대행업체로서 자격정지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 우편물 접수

- 1)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중 책자형(카탈로그형)에 대해서만 마케팅 대행이 가능함
- 2) 대행업체는 우편물 접수 시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이용 신청서’의 대행 업체란(업체명, 대행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우편물과 함께 제출해야 함

부 칙

1. 이 공고는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2011.11.24.)는 폐지한다.
2. 우정사업본부 공고 제2011-69호(2011.11.24.)에 따라 등록된 ‘상품 안내서’ 마케팅 대행업체는 본 공고에 따라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카탈로그형)’의 마케팅 대행업체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붙임1]

접수번호 : 0000-00-00-0000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이용 신청서			
발송인	상호		연락처
	성명		
	주소		
마케팅 대행업체	업체명		대행등록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서비스 형태	<input type="checkbox"/> 접착형	<input type="checkbox"/> 봉투형	<input type="checkbox"/> 브로마이드형 <input type="checkbox"/> 카탈로그형
전단지 제작	<input type="checkbox"/> 제작	<input type="checkbox"/> 제작안함	
전단지 용지	<input type="checkbox"/> 아트지	<input type="checkbox"/> 모조지	
전단지 크기	<input type="checkbox"/> 16절(197x272mm)	<input type="checkbox"/> A4(210x297mm)	
디자인 제작	<input type="checkbox"/> 제작	<input type="checkbox"/> 제작안함 ^(*)	
디자인 기초 자료 제출 방법	<input type="checkbox"/> 웹하드	<input type="checkbox"/> e-mail	
홍보물 제작 시 주소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제공 ^(**)	<input type="checkbox"/> 제공안함	
홍보우편물 표지 (정보 제출 자료)	(예시) 약도, 쿠폰, QR코드 등		
접수(신청) 수량	통		
배달 지역			

위와 같이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신청인 : ○ ○ ○ (서명 또는 인)

○ ○ ○ 우체국장 귀하

^(*) 디자인을 고객이 직접 제출할 때에는 웹하드[www.webhard.co.kr, 아이디(letter) 패스워드(guest)]에 로드하거나 우체국에서 대행할 경우에는 이메일(mystamp@posa.or.kr)로 전송

^(**) 신청인이 홍보할 지역의 주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주소정보 신청서를 작성·제출

<별지>

생활정보홍보우편물 제작에 따른 주소정보 제공 신청서

1. 접수번호 : _____ (_____우체국)

2. 요청건수 : _____ 건

3. 주소 선택 범위

기준주소(발송인 주소) : _____

<input type="checkbox"/> 행정구역으로 지정	<input type="checkbox"/> 기준주소에서 반경(도형)으로 선택
도/광역시 :	<input type="checkbox"/> 100m 이내
시/군/구 :	<input type="checkbox"/> 500m 이내
읍/면/동 :	<input type="checkbox"/> 1km 이내
기 타 :	<input type="checkbox"/> 기 타 :

4. 각종 통계수치를 적용한 주소정보 추출 (옵션, 미 체크 항목은 전체 적용됨)

① 성별 : 남성 여성 ② 혼인 여부 : 기혼 미혼

③ 연령 : 9세 이하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④ 소유형태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⑤ 주택형태 :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타()

⑥ 연건평 : 40㎡이하 40~59㎡ 60~84㎡ 85~99㎡ 100㎡ 이상

⑦ 범례(확률) 선택 50% 이상 70% 이상 80% 이상 기타()

[붙임2]

생활정보우편물 마케팅 대행업체 등록신고서

신고인	성 명	
	연 락 처	
대행업체	대표자명	(인)
	업 체 명	
	사업장 주소지	
	사무실 연락처	
마케팅 권역	"예시"서울특별시 전역	
거래업체 및 월 예상물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이용업체 : ○○ 백화점(통) <li style="padding-left: 100px;">○○ 쇼핑주식회사(통) ○ 기타 이용업체 : (통) 	
<p>상기업체는 ○○지방우정청의 생활정보홍보우편 서비스 마케팅 대행업체로 신고합니다.</p> <p style="font-size: 1.2em;">20 년 월 일</p> <p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 지방우정청장 귀하</p>		
<p>○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